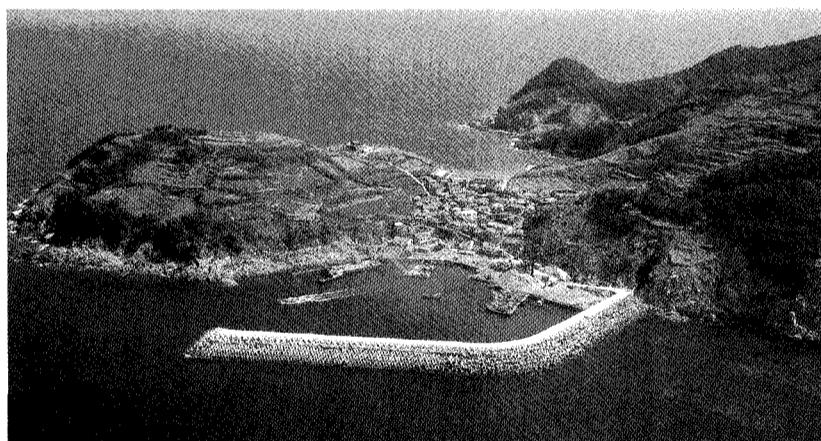


# 어촌어항소식

2004. 5 제1호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9번지 인의빌딩 13층 T. (02)3673-2851~4/3673-2856/568-6651 F. (02)3673-2857 www.fipa.or.kr 발행처/편집인 裴平岩·인쇄인 金在克 ISSN 1227-705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

## ‘어촌어항법 제정(안)’ 입법예고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어촌 특성화사업 활성화 한국어항협회



양수산부는 지난 8일 어촌과 어항을 연계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어촌어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제정의 방향은 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법안 구성은 부칙을 포함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촌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어촌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어촌발전지역계획, 어촌종합개발, 어항개발,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어촌·어항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전국의 어촌을

대상으로 지역특성, 개발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0년 주기로 ‘어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촌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했다.

‘어촌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할어촌에 대한 ‘어촌발전지역계획’을 확정하면 국가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항개발사업’ 등 어촌대상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특히 어촌주민의 새로운 어업외 소득원 사업으로서 자연경관이나 고유의 문화 등을 활용한 어촌특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또 한국어항협회를 어촌어항법에 맞추어

한국어촌어항협회로 개칭해 어촌어항 개발에 관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업무 영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어항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활성화, 다기능 종합어항 건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어촌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안에 어촌어항법과 하위령 제정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관련기사 4면)

### 공지

#### 제9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

한국어항협회는 일반국민들의 어촌·어항·어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및 바다와 친숙해 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제9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출품 규격은 8" × 10" 칼라사진, 출품기간은 오는 10월 1일~10월 5일이다. 주제는 연안을 중심으로 한 어업활동, 어촌·어항·어장 전경, 해양문화, 어촌 관광 등과 관련되는 미발표작품에 한한다.

문의 : 한국어항협회 기술홍보실  
(02)3673-2854, syt@fipa.or.kr